

2015-10 책임연구보고서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 소 영

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치안 체감안전도의 의의	7
1. 치안 체감안전도의 개념화	7
2.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의 검증 필요성	10
제2절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1. 경찰활동과 체감안전	11
2. 범죄인식과 체감안전	14
제3장 조사설계 및 분석 방법	17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17
1. 조사 방법	17
2. 설문의 구성	19
3. 조사대상자의 특성	22
제4장 분석결과	25
제1절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에 대한 인식 분석	25
1.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25

2. 4대 사회악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	31
제2절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 검증	51
1. 연구 모형 및 가설	51
2. 측정모형 분석	52
3. 구조모형 분석	54
제5장 논의 및 결론	57
제1절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과 전략요인	57
2. 지역사회의 치안환경과 체감안전	60
제2절 결론	63
참고문헌	66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3
<표 2> 성·연령별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26
<표 3> 성·연령별 4대 사회악 증가에 대한 인식 차이	28
<표 4> 성·연령별 4대 사회악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29
<표 5> 성·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31
<표 6> 성·연령별 성범죄의 증가 인식 차이	33
<표 7> 성·연령별 성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34
<표 8> 성·연령별 가정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36
<표 9> 성·연령별 가정폭력의 증가 인식 차이	38
<표 10> 성·연령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40
<표 11> 성·연령별 학교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42
<표 12> 성·연령별 학교폭력에 대한 증가 인식 차이	43
<표 13> 성·연령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45
<표 14> 성·연령별 불량식품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47
<표 15> 성·연령별 불량식품에 대한 증가 인식 차이	49
<표 16> 성·연령별 불량식품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50
<표 17>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52
<표 18>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53
<표 19>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및 공분산	54
<표 20> 수정모형에 따른 적합도 측정결과	55
<표 21>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56

그 림 목 차

<그림> 연구의 모형	51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3년 경찰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사회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후 경찰의 성과평가에도 국민 체감안전도를 포함시키면서 정책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평가와 체감안전도 등은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치안활동 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곤 한다.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은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공공기관의 외부평가 수단 중 하나로 학술적인 의미로는 주로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찰기관에서 조사하는 체감안전도의 내용은 범죄와 교통사고 안전도, 법질서 준수도 수준 등을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어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 생활의 안전과 관련한 의미에서의 체감안전과 경찰기관의 평가지표에 활용되는 체감안전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한 연구들도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체감안전, 체감치안 등에 대한 의미와 선행연구들에서 혼용하고 있는 범죄두려움과의 개념적 설명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무와 학술적인 개념을 재정리 하면서 경찰활동, 범죄안전 등 치안분야에서의 체감안전도로 범위를 한정하여 ‘치안 체감안전도’라는 개념을 재정의 하고자 한다.

한편, 치안 체감안전도는 그 간 범죄두려움과 개념을 혼용하여 검증해 온 연구들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사용된 한정된 변수들만을 활용해 검증한 소수의 연구들이 거의 전부이다.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치안 체감안전도를 개념화 하고 이에 대해 영향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들에서 검증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은 범죄 및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범죄두려움, 범죄피해두려움, 지역사회 무질서, 언론 등의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특성 즉, 성별, 연령, 생활수준, 지역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은 지난 2년간 변함없이 집중돼 왔고, 이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경찰의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조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및 ‘경찰활동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에 대책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체감안전도의 수준만을 보고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외에 어떤 요인들에 집중해서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어려웠다.

더욱이 경찰의 4대악 근절활동이 단기적으로는 체감안전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스페인과 일본 등의 국외사례에서 보면 정책의 실직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들이 있다. 스페인은 1999년 범죄발생지표 개선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 및 경찰 신뢰도 향상을 위해 ‘Programa Polocia 2000’ 정책을 발

표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6대범죄(마약, 날치기, 침입절도, 자동차절도, 자동차 내 물건절도, 폭력범죄)근절에 경찰활동을 집중하였다. 시행 첫째, 범죄율은 6%가 감소하고 시민조사에서 공공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응답률이 42%까지 올랐다. 그런데 2002년에 와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10% 증가하여, 이후에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일본에서도 2002년~2010년까지의 범죄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체감안전은 범죄감소율에 비추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¹⁾

이러한 사례들에서만 보아도 ‘4대 사회악 근절’이라는 상징적인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는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찰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 중 어떠한 요인이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한편,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경찰이 주로 비교분석하는 범죄발생률 및 검거율 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요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2012년 수원, 제주 등 부녀자 살인사건이 빈발하면서 지역주민의 불안감 확산으로 체감안전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 이면을 살펴보면, 제주 부녀자 살인사건의 경우 제주 동부서의 체감안전도 변화를 보면 사건을 전 후로 하여 상반기 대비 하반기 체감안전도가 약 14점 정도나 급락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지역은 실제 제주 서귀포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자의 실종 최종 기지국 및 범인검거가 제주 동부서에서 이루어졌으며 언론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접하게 되는 시민들에게는 동부서 사건으로 인식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즉, 범죄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대한 정보, 소문, 주변 환경 등 안전에 대한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1)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2015, 2014.

이처럼 치안 체감안전도는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종합해가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 될 필요가 있다. 특히, 4대 사회악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인식변화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4대 사회악 근절활동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4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활동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에 대한 후속 연구로,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요인의 검증을 통해 향후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요인별 치안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4대 사회악 인식조사에 이은 후속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선행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대 사회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 인식을 토대로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범위로 하였다.

우선, 체감안전도의 개념을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정리한 것에서 나아가 ‘치안 체감안전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리하면서 개념화하였다. 일반

적으로 경찰기관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조사해 왔다. 4대 사회악의 경우에는 각 범죄유형마다의 안전한 정도를 조사해 왔는데, 체감안전에 대한 범죄 유형과 경찰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면서 ‘치안’ 분야의 체감안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치안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된 경찰과 접촉한 경험을 불문하고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가시적 경찰활동’을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검증결과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논의가 되고 있는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을 두 번째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즉, 가시적 경찰활동이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에 대한 재검증과 범죄에 대한 인식을 검증함으로써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 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모든 요인들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검증결과가 갖고 있는 시사점을 토대로 기타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범죄발생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공식 언론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범죄발생 인식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치안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 1차 자료는 2014년 ‘경찰의 4대 사회약 근절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지역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10대부터 60대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우편(e-mail)과 무작위 전화면접(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문의 구성은 ‘범죄로부터 안전’, ‘지난 1년 간 범죄의 증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수준은 5점 척도를 사용하고 무응답의 경우 결측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한 결측자료 54건을 제외한 1,046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초통계량에 대한 분석은 선행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면,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체감안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된 보고서에서는 혼인상태와 가구형태도 통제변수로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T-test와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에 유의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의 기초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해 인식 수준을 재검토 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인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모형측정을 위해서는 Amo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치안 체감안전도의 의의

1. 치안 체감안전도의 개념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감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영평가의 중요한 ‘국민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²⁾ 경찰기관의 경우 범죄 검거율,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 등의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치안고객 만족도, 체감안전도, 내부만족도 등 주관적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하고 있다. 즉,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지표이자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기관은 체감치안, 치안체감도, 체감안전도 등의 실무상 용어로 사용해 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이나 고객만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치안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범죄두려움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안전영역 중에서도 경찰활동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³⁾

범죄두려움은 ‘사람이 범죄피해에 희생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야기 되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 불안 또는 공포’라는 의미로 정의되는데

2) 유효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비교분석”, 공공기관연구센터 포커스, 2013, 2면.

3) 정철우·강소영,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4호, 2014, 3~32면.

(Mclaughlin & Muncie, 2006: 164)⁴⁾, 범죄에 대한 불안(anxiety of crime),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성(public sensibilities towards crime)을 포함하여 체감안전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으로 사용할 경우 범죄 이외에 안전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또한, 체감안전도는 일상생활 중 느끼는 무질서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한 안전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⁵⁾

즉, 지금까지 체감안전도는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안전감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을 토대로 실무상 공공기관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학술적 의미의 근거를 통해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치안 영역에서의 체감안전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강소영(2014)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⁶⁾ 반면, 미국의 안전지표는 범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이 안전, 화재, 교통사고, 허리케인 등과 같은 불의사고, 소비자 안전, 경제적 위기 등의 광범위한 요인들을 안전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⁷⁾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2014)은 안전의 범위를 크게 범죄와 사고로 하

4)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6.

5) 최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102면.

6) 강소영, “경찰의 4대 사회약 근절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 치안정책연구소, 2014, 16~18면.

7) 김연수·김도우, “범죄안전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24(4), 2013, 295-238면.

위영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치안과 관련한 안전 지표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범죄발생 및 피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범죄 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예방, 법집행의 공정성 등을 세부 영역으로 묶으로써 범죄두려움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안전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2013)는 21개 핵심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최근 잦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분야(성폭력, 학교폭력, 인터넷 음란물, 교통사고 등),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풍수해, 산불 등)’ 그리고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지진, 원자력 사고 등)’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치안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로는 범죄와 교통사고가 포함되어 있다.⁸⁾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체감안전도는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범죄두려움을 포함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치안 관련 체감안전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이 요인들 중 범죄, 범죄두려움, 범죄피해, 질서, 교통안전 등의 치안 영역 및 경찰활동의 범위를 통해 의미를 재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치안체감도’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치안환경 및 경찰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안전한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용어로 실무적 의미로 이미 상용되어 왔다. 사전적 의미로 ‘치안(治安)’은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을 의미하여, ‘체감(體感)’은 ‘몸으로 어떤 감각을 느낌’으로 정의되어 있다.⁹⁾ 이러한

8) 강소영, 앞의 보고서, 2014.

9)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B9%98%EC%95%88%EC%B2%B4%EA%B0%90&query=%EC%B9%98%EC%95%88%EC%B2%B4%EA%B0%9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경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를 ‘치안 체감안전도’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의 검증 필요성

이 연구는 치안 체감안전도에 대한 정의를 개념화하고,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범죄두려움, 치안성과, 고객만족 등 다양한 치안 체감안전과 관련한 영향관계들에서 검증해 왔다. 그러나 치안 체감안전도의 개념적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르고, 이에 대한 요인들도 연구자가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공식 범죄발생률, 범죄두려움, 지역사회 의 무질서, 가시적 경찰활동 그리고 언론보도 등의 요소들은 공식적 수치보다는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체감안전도를 조사하는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치안 체감안전도 조사는 치안정책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찰활동이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체감안전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다.¹⁰⁾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과거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범죄에 대한 정보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체감안전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미 상

10) 정철우·강소영, 앞의 논문, 2014 참고.

당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검증 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검증했던 연구는 거의 없었고, 특히, 범죄발생 인식에 대한 변수가 체감안전이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는 그것이 정적(+) 영향인지, 부적(-) 영향인지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변수인 경찰활동과 범죄인식에 대한 요인을 중심으로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범죄발생률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는 전략에서 나아가, 다양하고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은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제2절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찰활동과 체감안전

기존의 연구들에서 체감안전 또는 치안 체감안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 다양한 연구들에서 경찰과의 접촉경험이 시민들에게 경찰기관을 평가하거나 경찰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Cheurprakobkit & Bartsch(2001)는 시민들이 경찰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접촉에 따라 경찰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¹¹⁾ Weizer & Tuch(2005),

11) Cheurprakobkit, Sutham & Bartsch, Robert A., "Police performance: A Model for assessing citizens' satisfac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e attributes", Police

Skogan(2006) 등의 연구들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접촉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²⁾ 그러나 경찰과의 접촉과정 또는 방식이 경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¹³⁾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찰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범죄예방활동, 교통질서 위반, 사고처리, 기타 법질서 단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시적인 경찰활동에 의해 경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¹⁴⁾

또한, 경찰의 주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수단이 강제적·직접적이어서 가시성이 높고,¹⁵⁾ 정복경찰은 시민의 순응과 협력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⁶⁾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제복경찰의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검증한 바 있다.¹⁷⁾ 결국 경찰활동에 대한 높은 가시성은 시민이 보다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들은 경찰활동의 가시성이 시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측정해 왔다. Salmi, Gronroos & Keskinen(2004)의 연구에서는 차량과 도보순찰이 대물 및 대인범죄와의 관계를 분석을 통해 도보순찰이 범죄두려움을 감소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¹⁸⁾ 또한, Lyman(2005)

Quarterly 4(4), 2001, p. 450.

12) Weitzer, Ronald & Tuch, Steven A., "Determinants of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5, pp. 279-297; Skogan, Wesley G., "Asymmetry in the impact of encounters with police", *Policing and Society* 16(2), 2006, pp. 99-126.

13)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대왕사, 2003, 98면.

14) 정철우·강소영, *앞의 논문*, 2014.

15) 김영환, "경찰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경찰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2003, 100면.

16) 최선우, *앞의 책*, 2003, 100면.

17) 이윤호,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245-246면.

18) Salmi, Chermak, S., McGarrell, E. & Gruenewald, J., "Media coverage of police misconduct and attitudes toward police", *Policing* 29(2), 2006, pp. 577-587.

은 정복경찰의 직접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이 시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직접적·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⁹⁾ 마찬가지로, Charles Bahn(1974)는 시민들이 경찰관이나 순찰차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안전감을 느끼고(Bahn, 1974, 342; 차훈진, 2010)²⁰⁾, 도보 및 자전거 순찰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시민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Dukes & Portillos; 2009: 299).²¹⁾

또한, Zhao(2002)등은 선행연구 50개를 메타분석을 하였는데, 연구결과 62%에서 경찰 가시성의 증가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²²⁾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가시성이 범죄두려움과 경찰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도보순찰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순찰의 가시성은 범죄두려움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즉, 가시적인 경찰활동의 방법은 그 수단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유도하고, 대부분 가시적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에 따른 접촉 증대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Villarreal & Silva, 2006).²⁴⁾ 즉, 경찰활동에 대한 접촉이나 가시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19) Lyman, Michael D., *The Police: An Introduct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p. 122.

20) 차훈진. “영국의 시민 안심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0, 2010, 341-342면.

21) Dukes, Richard L. & Portillos, Edwardo, “Mod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olice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32(2), 2009, p. 299.

22) Zhao, Jihong., Scheider, Matthew, & Thurman, Quint c.,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 2002, 273-299.

23) 송봉규·장석현,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효과성 연구: 경찰에 대한 만족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 2013, 112- 136.

따라 시민들이 반응하는 수준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은 실제 범죄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체감 안전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시적 경찰활동이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편,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연구로 윤철규와 최응렬(2015)은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 관련 경찰활동이 시민의 체감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있다.²⁵⁾ 여기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체감안전도에 있어 성별 연령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의 만족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찰활동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범죄유형이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체감안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범죄인식과 체감안전

범죄에 대한 인식은 학술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범위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상의 연구들에서 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주관적 인식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인식을 범죄인식으로 표현 해 왔다. 우선, 범죄인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범죄두려움은 경찰활동과도 깊은

24) Villarreal, A. & Silva, B.,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2006, pp. 1725-1753.

25) 윤철규·최응렬, “4대 사회악 관련 경찰활동과 시민 체감안전도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53, 2015, 107-128면.

관계가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경찰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커지거나(이윤호, 1990: 249)²⁶⁾, 범죄두려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혀 왔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Weitzer & Tuch, 2005).²⁷⁾ 이러한 이유로 행정자치부나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범죄두려움을 대표적인 조사도구로 사용해 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관련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해 왔다.²⁸⁾

또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범죄두려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Ferraro, 1995)²⁹⁾. Ferraro와 LaGrange(1987)는 범죄피해위험 인식과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⁰⁾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한 범죄사건은 종종 개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Skogan & Maxfield, 1981).³¹⁾ 또한, 이전에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Ferraro(1995)의 위험해석 모델은 개인의 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이 각 개인이 인지하고 해석하는 범죄피해 위험 가능성에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대중매

26) 이윤호,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27) 강소영, 앞의 논문, 참고.

28) 치안관련 안전지수는 주로 미검률, 범죄피해율, 재범률 등의 증감으로 파악하고 있어, 실제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체감안전도의 측정지표와는 다를 수 있다.

29) Ferraro, Kenneth F.,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30) Ferraro, K. F. & LaGrange, R.,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1987, pp. 70-101.

31) Skogan, W. and M.G. Maxfield.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1981.

체,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과 같은 생태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범죄피해경험, 성별, 개인의 건강 등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수록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취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높아지는데 이를 행동제약(constrained behavior)이라고 부른다. 즉, 행동에 제약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범죄를 연상하게 되고, 이는 곧 범죄두려움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Skogan과 Maxfield(1981)의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범죄의 유형이 강도나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폭행일 경우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범죄두려움, 피해두려움, 지역사회 내 범죄정보, 대중매체 등에서 얻어지는 범죄정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에 의해 형성되는 범죄인식은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도 별개의 연구들에서 검증된 바 있다.

제3장 조사설계 및 분석 방법

제1절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³²⁾

이 연구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인식수준을 바탕으로 경찰의 치안정책수립 및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에서 경찰청 치안정책 고객평단 대상의 이메일(e-mail)과 무작위 전화면접(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체감안전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화면접조사는 Chaffe&Choe(1980)의 ‘Random-Digit-Dialing’ 방법으로 전화번호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번호별로 비례확률에 의해 일차 표집을 하고, 표집된 지역 내에서 4대의 전화번호를 건너뛰면서 대상자를 선택하여 표본을 만든다.³³⁾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에서 무응답이 나오지 않는 대상자에게만 조사를 이어가고, 무응답이 가능한 문항은 2개를 넘지 않아 결측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화면접조사의 특성상,

32) 이 연구는 치안정책연구소(2014)에서 수행된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의 후속연구로 설문의 조사방법 및 구성내용은 앞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일부 분석방법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다.

33) 홍성렬,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시그마프레스, 2005, 47-48면.

질문내용이 함축적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주로 모니터요원의 근무시간 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일 오후까지 집에 있는 응답자의 연령에 대한 할당표집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다음으로 설문에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연령(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남, 여)이 있으며, 16개의 지방경찰청을 지역적 특성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의 행정자치부와 경찰기관의 조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청소년층의 인식을 확인하고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10대 연령층을 표본에 추가하였다.

다만, 이 연구가 전국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적 변수를 16개 지방경찰청으로 구분하여 표집에 사용하였으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즉 지역의 공식범죄발생률, 인구, 치안상황, 경제적 특성 등의 지역변수를 모두 통제하거나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체감안전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³⁴⁾

그리고 4대 사회악 범죄유형의 특성상 범죄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아동 및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구형태와 혼인여부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경제적 수준과 학력, 직업유형 등도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으나, 곤란한 응답의 경우 전화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적절한 결측자료 54건을 제외한 1,046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0.0를 사용하여, 체감안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치

34) 지역변수 등을 고려한 논의는 이 연구 이후에 시행되는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을³⁵⁾ 경로분석하기 위해 Amo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2. 설문의 구성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4대 사회악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 두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우선 4대 사회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4대 사회악 중 최우선 근절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에 대해 느끼는 심각한 정도를 알아보고, ‘4대 사회악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 정부의 치안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는 각 범죄유형별 ‘우리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안전한 정도’, ‘지난 1년 간 증감여부에 대한 생각’, ‘경찰 개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수행한 체감안전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그간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경찰활동의 성과와 평가로 짐작할 수 있는 범죄증가에 대한 인식과 개입여부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체감안전의 수준을 유추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해 구성하였다.

한편, 체감안전도 조사 연구들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또는 점수화한 결과가 주로 공개된다. 체감안전도와 관련한 변수를 통해 영향관계를 측정한 최천근(2011)의 연구는 체감안전도를 범죄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범죄안전과 지역사회 체감안전 수준

35) 구조방정식모형은 복수의 관찰변수와 잠재변수(latent trait)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통계모형으로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일반선형모형을 말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관찰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모형의 명세화 과정에서 허용하며, 관찰변수들의 측정모형의 명세화에서 허용하여 측정오차 분산을 관찰분산에서 분해함으로써, 구조방정식모형에 명세화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는 장점이 있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632&cid=41989&categoryId=41989>).

을 체감안전도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보고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두려움 자체를 하나의 수준으로 체감안전이라고 측정한 것은 자료의 손실 등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체감안전도는 4대 사회악 개별 범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설정하고 각 범죄에 대한 안전한 정도를 통해 범위를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체감안전에 대한 문항은 경찰청(2014) ‘치안체감도 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개별 4대 사회악 범죄에 대한 안전한 정도로 수정하였다. 여기서의 체감안전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조사한 범죄두려움과는 차이를 두었으며, 전화조사라는 한계에 따라 체감안전이라는 상위개념의 통합 질문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한 해 정부의 핵심 치안정책의 상당부분은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과 체감안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경험하는지, 또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치안상황과 조사대상자들의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은 조사의 한계로 남는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치안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난 한 해’라는 과거 기억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범죄의 증가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경찰청 치안체감도 조사에 포함된 정부 및 경찰의 대책

에 관한 문항은 대부분 응답자들에게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경찰활동 및 경찰개입에 대한 인식을 수정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치안정책에 대한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경찰활동의 가시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시성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매체나 지역사회 내에서 경찰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범죄는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³⁶⁾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4대 사회악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가정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관계 및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단, 이 연구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전화조사의 한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적 특성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 학업 수준, 직업 등과 관련한 민감한 유형의 변수는 제외하였다.³⁷⁾

마지막으로 설문항목은 4대 사회악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

36) Clemente, F. & Kleinman, M. B.,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 1977, pp. 519-532; Skogan, W. & Maxfield, M. G.,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1.

37) 경찰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내부자료, 2013.
최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 2012, 103-129면; Hunter, A., Symbols of incivilities: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TX, November, 1979; Moore, M. H., Trojanowicz, R. C. & Kelling, G. L., *Crime and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2,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988.

도,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에 대한 범죄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인식,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또는 예방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1이 ‘매우 잘알고 있다’, 5는 ‘전혀 모르겠다’로 이루어졌다. 분석에서는 이를 5를 ‘매우 잘알고 있다’, 1은 ‘전혀 모르겠다’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1,046명 중 남성이 453명(43.3%), 여성이 593명(56.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의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으나 고른 분포의 응답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8명(6.5%), 20대가 144명(13.8%), 30대가 175명(16.7%), 40가 279명(26.7%), 50대가 220명(21.0%) 그리고 60대 이상이 150명(15.3%)로 나타났다.

체감안전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들은 조사대상에서 20대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성인 남·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경우 4대 사회악 중 학교폭력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10대를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일부 전화조사의 경우 집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로 노인층이 많은 경우가 있고, 2012년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의 응답비율이 66.7%나 차지하고 있어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³⁸⁾ 이러한 점에서, 이 조사의 성별, 연령별 비율의 분포도는 이전의 조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기혼이 724명(69.7%)이

38) 정철우·강소영, 앞의 논문, 참고.

고, 미혼은 314명(30.3%)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에서는 1인 가구는 113명(10.9%)으로 1인 초과 가구 922명(88.1%)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6개 지방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지역별 분포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인구분포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표집이 되었다.³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187명(17.9%), 경기 182명(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주지역은 40명으로 울산, 전북, 전남 지역과 함께 3.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53	43.3
	여	593	56.7
	합계	1,046	100.0
연령	10대	68	6.5
	20대	144	13.8
	30대	175	16.7
	40대	279	26.7
	50대	220	21.0
	60대 이상	150	15.3
	합계	1,046	100.0
혼인상태	기혼	724	69.7
	미혼	314	30.3
	합계	1,038	100.0
가구형태	1인 가구	113	10.9
	1인 초과 가구	922	88.1
	합계	1,035	100.0

39) 행정자치부,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역	서울	187	17.9
	부산	82	7.8
	대구	53	5.1
	인천	54	5.2
	광주	43	4.1
	대전	41	3.9
	울산	40	3.8
	경기	182	17.4
	강원	41	3.9
	충북	41	3.9
	충남	42	4.0
	전북	40	3.8
	전남	40	3.8
	경북	60	5.7
	경남	60	5.7
	제주	40	3.8
	합계	1,046	100.0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에 대한 인식 분석

1.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4대 사회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반응을 차이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반응결과는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체감안전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2.45, 표준오차는 0.16으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1045)=33.22$, $p<.001$). 이는 전반적인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수준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성·연령별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2.70(0.18)	2.65(0.15)	3.05(0.15)	2.84(0.15)	3.00(.)	2.56(0.10)	3.00(0.25)	1.75(.)	2.91(0.11)	2.65(0.08)
20대	2.61(0.12)	2.34(0.06)	2.58(0.17)	2.78(0.12)	2.80(0.09)	2.35(0.22)	3.25(0.25)	2.88(0.87)	2.64(0.09)	2.40(0.06)
30대	2.65(0.08)	2.30(0.06)	2.41(0.13)	2.25(0.07)	2.53(0.12)	2.32(0.12)	2.75(0.25)	2.00(.)	2.57(0.06)	2.29(0.05)
40대	2.51(0.07)	2.37(0.04)	2.29(0.12)	2.44(0.07)	2.75(0.08)	2.25(0.11)	2.54(0.13)	2.67(0.34)	2.47(0.05)	2.38(0.04)
50대	2.54(0.08)	2.38(0.07)	2.39(0.12)	2.37(0.08)	2.44(0.13)	2.46(0.12)	2.43(0.08)	2.22(0.13)	2.47(0.05)	2.37(0.05)
60대	2.60(0.16)	2.32(0.09)	2.60(0.10)	2.26(0.12)	2.63(0.23)	2.34(0.20)	2.52(0.11)	2.35(0.15)	2.57(0.07)	2.32(0.07)
70대 이상	2.44(0.13)	2.29(0.21)	2.13(0.13)	2.28(0.28)	2.44(0.15)	2.44(0.21)	2.60(0.36)	2.38(0.09)	2.45(0.12)	2.33(0.11)
소계	2.57(0.04)	2.36(0.03)	2.50(0.06)	2.44(0.04)	2.56(0.07)	2.36(0.05)	2.54(0.06)	2.37(0.09)	2.55(0.03)	2.38(0.02)

그리고 우리사회가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90) = 2.79, p < .001, MSE = 0.27, \eta^2 = .02$, 성별의 주효과, $F(1,990) = 15.48, p < .01, MSE = 0.27, \eta^2 = .02$ 가 유의하였다. 근절의 우선순위의 효과는 없었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사회가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10대의 응답이 나머지 연령대의 응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0-70대의 응답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연령대	사례수	서브세트	
		1	2
70대 이상	41	2.3801	
30대	175	2.4024	
40대	279	2.4119	
50대	220	2.4246	
60대	119	2.4566	
20대	144	2.4954	
10대	68		2.7647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30대, 6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4대약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 value	p -value
10대	1.64	0.20
20대	5.91	0.015
30대	13.54	0.001
40대	2.27	0.100
50대	1.74	0.187
60대	6.65	0.01
70대 이상	.76	0.385

2) 지난 1년 간 4대 사회악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한 반응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은 3.37, 표준오차는 0.16으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1045) = 22.88, p < .001$). 이는 4대 사회악이 지난 1년 동안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성·연령별 4대 사회악 증가에 대한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49(0.25)	3.43(0.15)	3.17(0.13)	3.25(0.18)	3.25(.)	3.02(0.13)	3.63(0.13)	3.75(.)	3.32(0.12)	3.26(0.09)
20대	3.36(0.11)	3.53(0.05)	3.42(0.12)	3.11(0.17)	3.40(0.23)	3.56(0.18)	2.75(0.50)	3.25(0.50)	3.36(0.07)	3.49(0.05)
30대	3.43(0.09)	3.50(0.06)	3.42(0.17)	3.44(0.10)	3.42(0.15)	3.49(0.12)	3.08(0.22)	3.50(.)	3.41(0.07)	3.49(0.05)
40대	3.29(0.06)	3.49(0.05)	3.31(0.09)	3.40(0.08)	3.25(0.14)	3.56(0.08)	3.41(0.12)	3.46(0.22)	3.31(0.05)	3.48(0.04)
50대	3.37(0.08)	3.28(0.08)	3.27(0.12)	3.39(0.13)	3.47(0.17)	3.30(0.13)	3.18(0.09)	3.59(0.10)	3.32(0.05)	3.34(0.06)
60대	3.02(0.14)	3.26(0.13)	3.27(0.11)	3.20(0.16)	3.42(0.20)	3.49(0.23)	3.31(0.13)	3.36(0.11)	3.24(0.07)	3.31(0.07)
70대 이상	3.39(0.17)	3.14(0.16)	3.63(0.13)	3.43(0.29)	3.75(0.14)	2.94(0.16)	2.80(0.15)	3.40(0.20)	3.31(0.12)	3.23(0.11)
소계	3.34(0.04)	3.44(0.03)	3.31(0.05)	3.36(0.05)	3.43(0.08)	3.41(0.05)	3.24(0.06)	3.45(0.07)	3.33(0.03)	3.42(0.02)

그리고 우리사회가 4대 사회악에 대한 지난 1년 간 증가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근절의 우선순위,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 성범죄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 또는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 반응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은 2.79, 표준오차는 0.20으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1045)=10.04$, $p<.001$). 이는 경찰의 4대악 근절활동이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수준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연령별 4대 사회악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45(0.14)	3.08(0.14)	3.33(0.20)	3.27(0.17)	3.50(.)	3.38(0.19)	3.88(0.63)	3.25(.)	3.42(0.12)	3.23(0.09)
20대	2.98(0.15)	2.55(0.06)	2.75(0.16)	2.64(0.12)	3.15(0.10)	2.50(0.30)	3.00(0.00)	2.50(0.50)	2.93(0.10)	2.55(0.06)
30대	2.70(0.09)	2.47(0.06)	2.57(0.12)	2.46(0.14)	2.83(0.15)	2.51(0.10)	3.00(0.29)	2.25(.)	2.73(0.07)	2.47(0.05)
40대	2.74(0.07)	2.59(0.06)	2.65(0.12)	2.69(0.08)	3.45(0.41)	2.59(0.10)	3.00(0.12)	2.67(0.20)	2.79(0.06)	2.62(0.04)
50대	2.93(0.1)	2.71(0.09)	2.90(0.13)	2.90(0.15)	2.70(0.18)	2.61(0.17)	2.59(0.12)	3.00(0.18)	2.82(0.06)	2.76(0.07)
60대	3.16(0.21)	3.02(0.14)	3.00(0.16)	2.78(0.12)	3.54(0.28)	2.72(0.30)	2.78(0.11)	2.98(0.16)	2.99(0.09)	2.92(0.08)
70대 이상	3.44(0.3)	3.36(0.28)	3.50(0.75)	3.54(0.49)	2.67(0.51)	4.13(0.39)	3.65(0.36)	3.25(0.26)	3.37(0.20)	3.51(0.18)
소계	2.91(0.05)	2.65(0.03)	2.86(0.06)	2.79(0.06)	2.95(0.10)	2.72(0.07)	2.87(0.07)	2.94(0.09)	2.90(0.03)	2.71(0.03)

그리고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활동에 대한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90) = 10.14$, $p < .001$, $MSE = 0.39$, $\eta_p^2 = .06$, 성별의 주효과, $F(1,990) = 8.02$, $p < .01$, $MSE = 0.39$, $\eta_p^2 = .01$,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F(6,990) = 2.19$, $p < .05$, $MSE = 0.39$, $\eta_p^2 = .01$,이 유의하였으며, 근절의 우선순위의 효과는 없었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4대악 범죄 예방 활동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70대 이상과 10대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20대, 30대, 40대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이 평균 이하라고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	사례수	서브세트		
		1	2	3
30대	175	2.5719		
40대	279	2.6816		
20대	144	2.7002		
50대	220	2.7947	2.7947	
60대	119		2.9608	
10대	68			3.3125
70대 이상	41			3.4533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활동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0대, 50대, 60대, 70대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 value	p -value
10대	.05	0.81
20대	14.74	0.001
30대	13.06	0.001
40대	8.35	0.01
50대	.53	0.47
60대	.77	0.38
70대 이상	3.42	0.07

2. 4대 사회악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평균은 2.51, 표준오차는 0.21으로 응답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918)=22.40, p<.001$). 이는 국민들이 우리사회가 성범죄로부터 평균 이하의 안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5> 성·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2.73(0.24)	2.62(0.21)	2.93(0.18)	2.90(0.23)	3.00(.)	2.33(0.14)	2.50(0.50)	2.00(.)	2.83(0.13)	2.58(0.12)
20대	2.69(0.12)	2.29(0.07)	2.87(0.19)	2.56(0.24)	3.60(0.24)	2.57(0.30)	3.50(0.50)	4.00(.)	2.86(0.10)	2.38(0.07)
30대	2.67(0.1)	2.29(0.07)	2.73(0.24)	2.24(0.11)	2.53(0.17)	2.32(0.12)	3.00(0.58)	2.00(.)	2.66(0.08)	2.28(0.05)
40대	2.50(0.08)	2.34(0.06)	2.60(0.14)	2.54(0.09)	3.00(0.45)	2.33(0.10)	2.79(0.19)	2.67(0.33)	2.59(0.07)	2.41(0.04)
50대	2.69(0.1)	2.26(0.07)	2.48(0.13)	2.59(0.12)	2.47(0.17)	2.71(0.19)	2.77(0.15)	2.56(0.29)	2.63(0.06)	2.44(0.06)
60대	2.64(0.17)	2.33(0.14)	2.54(0.14)	2.13(0.12)	2.50(0.22)	2.83(0.40)	2.67(0.17)	2.64(0.25)	2.62(0.09)	2.46(0.11)
70대 이상	2.67(0.21)	2.29(0.18)	2.00(0.00)	2.40(0.24)	3.50(0.50)	2.00(0.00)	3.00(0.32)	2.25(0.25)	2.80(0.17)	2.25(0.10)
소계	2.63(0.05)	2.32(0.03)	2.65(0.07)	2.50(0.06)	2.71(0.11)	2.43(0.07)	2.77(0.09)	2.58(0.14)	2.67(0.03)	2.40(0.03)

그리고 성범죄의 체감안전도가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863) = 2.79, p < .05, MSE = 0.39, \eta_p^2 = .02$, 성별의 주효과, $F(1,863) = 17.083, p < .001, MSE = 0.39, \eta_p^2 = .02$, 근절의 우선순위의 주효과, $F(1,863) = 2.83, p < .05, MSE = 0.39, \eta_p^2 = .01$, 가 유의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지만 Tukey 분석에 따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근절의 우선순위에 대해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Tukey 분석결과,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1순위로 꼽은 사람들이 불량 식품을 1순위로 꼽은 사람에 비해 지각된 안정감이 낮았다.

근절우선순위	N	서브세트	
		1	2
성폭력	454	2.45	
가정폭력	143	2.53	
학교폭력	211	2.57	2.57
불량식품	111		2.71
유의수준		0.233	0.164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대,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0대와 60대는 성별의 차이가 없었지만, 10대 여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에서 성차가 나오지 않은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F value	p -value
10대	1.75	0.19
20대	16.10	0.001
30대	15.38	0.001
40대	6.19	0.013
50대	4.55	0.03
60대	1.84	0.18
70대 이상	6.78	0.009

2) 지난 1년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57, 표준오차는 0.26으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918)=22.44, p<.001$). 이는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성범죄가 증가하였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6> 성·연령별 성범죄의 증가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45(0.31)	3.53(0.24)	3.33(0.19)	3.27(0.27)	3.00(.)	3.42(0.19)	4.00(0.00)	4.00(.)	3.41(0.15)	3.44(0.13)
20대	3.56(0.16)	3.98(0.09)	3.44(0.17)	3.44(0.29)	3.00(0.32)	3.70(0.15)	3.00(1.00)	3.50(0.50)	3.46(0.11)	3.89(0.08)
30대	3.73(0.13)	3.82(0.11)	3.54(0.22)	3.47(0.15)	3.47(0.19)	3.67(0.17)	3.00(0.00)	4.00(.)	3.59(0.09)	3.73(0.08)
40대	3.35(0.09)	3.80(0.08)	3.37(0.15)	3.79(0.11)	3.20(0.37)	3.82(0.13)	3.43(0.20)	3.50(0.43)	3.36(0.07)	3.79(0.06)
50대	3.55(0.12)	3.51(0.12)	3.37(0.19)	3.36(0.17)	3.65(0.24)	3.72(0.19)	3.32(0.14)	3.91(0.21)	3.48(0.08)	3.56(0.08)
60대	3.19(0.26)	3.40(0.23)	3.60(0.16)	3.30(0.21)	3.67(0.21)	3.57(0.30)	3.39(0.16)	3.38(0.29)	3.42(0.10)	3.40(0.13)
70대 이상	3.57(0.2)	3.11(0.39)	3.50(0.50)	3.50(0.43)	3.33(0.33)	2.75(0.48)	3.00(0.32)	3.40(0.24)	3.35(0.15)	3.21(0.20)
소계	3.49(0.06)	3.74(0.05)	3.43(0.07)	3.54(0.07)	3.46(0.11)	3.65(0.07)	3.34(0.08)	3.57(0.14)	3.45(0.04)	3.67(0.03)

성범죄의 증가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절의 우선순위,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 성범죄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대, 40대에서만 여성의 지각된 성범죄 증가율이 남성의 지각된 성범죄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F value	p -value
10대	0.01	0.913
20대	12.04	0.001
30대	2.13	0.145
40대	20.22	0.001
50대	0.60	0.44
60대	0.01	0.921
70대 이상	0.93	0.336

3) 경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은 2.98, 표준오차는 0.28으로 응답의 중간 값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이 경찰의 성범죄 예방 활동이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7> 성·연령별 성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64(0.2)	3.27(0.18)	3.80(0.22)	3.73(0.24)	3.00(.)	3.67(0.26)	4.50(0.50)	3.00(.)	3.76(0.15)	3.51(0.13)
20대	3.16(0.18)	2.71(0.10)	3.18(0.26)	2.78(0.22)	3.80(0.20)	2.60(0.37)	3.00(0.00)	3.00(0.00)	3.21(0.13)	2.71(0.09)
30대	3.09(0.16)	2.48(0.09)	2.62(0.14)	2.65(0.19)	3.21(0.18)	2.67(0.14)	3.33(0.33)	2.00(.)	3.04(0.10)	2.55(0.07)
40대	2.85(0.1)	2.76(0.07)	3.19(0.21)	2.81(0.12)	3.40(0.40)	2.82(0.15)	3.14(0.21)	2.33(0.33)	3.01(0.09)	2.77(0.06)
50대	3.33(0.13)	2.82(0.14)	3.30(0.18)	2.91(0.19)	2.75(0.31)	2.50(0.25)	2.77(0.17)	3.55(0.25)	3.13(0.09)	2.86(0.10)
60대	3.31(0.28)	3.10(0.18)	3.07(0.27)	3.10(0.18)	3.83(0.31)	2.88(0.30)	2.93(0.16)	2.93(0.21)	3.14(0.12)	3.02(0.10)
70대 이상	3.57(0.43)	3.44(0.29)	3.50(0.50)	3.67(0.49)	3.00(1.15)	4.50(0.29)	4.20(0.20)	3.40(0.40)	3.65(0.27)	3.67(0.20)
소계	3.16(0.07)	2.77(0.05)	3.22(0.09)	2.95(0.08)	3.20(0.14)	2.88(0.09)	3.07(0.10)	3.05(0.14)	3.16(0.04)	2.84(0.04)

그리고 성폭력 근절활동에 대한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81) = 5.76, p < .001, MSE = 0.74, \eta_p^2 = .03$, 성별의 주효과, $F(1,981) = 7.39, p < .01, MSE = 0.74, \eta_p^2 = .01$, 가 유의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대와 70대는 20-60대보다 경찰의 성범죄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령대	사례수	서브세트	
		1	2
30대	174	2.74	
40대	278	2.86	
20대	142	2.91	
50대	216	3	
60대	118	3.08	
10대	68		3.62
70대 이상	41		3.66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대, 60대, 70대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성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 value	p -value
10대	0.07	0.78
20대	12.72	0.001
30대	19.81	0.001
40대	8.20	0.01
50대	5.33	0.021
60대	0.77	0.38
70대 이상	0.86	0.35

4) 가정폭력의 체감안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2.61, 표준오차는 0.25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t(1040)=15.21$, $p<.001$). 이는 국민들이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평균 이하의 안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8> 성·연령별 가정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00(0.23)	3.00(0.22)	3.47(0.19)	3.09(0.21)	3.00(.)	2.83(0.24)	3.50(0.50)	2.00(.)	3.28(0.14)	2.95(0.13)
20대	2.78(0.16)	2.45(0.09)	2.83(0.20)	2.89(0.26)	2.80(0.37)	2.40(0.27)	4.00(0.00)	3.50(1.50)	2.84(0.12)	2.52(0.08)
30대	2.91(0.13)	2.31(0.09)	2.46(0.29)	2.47(0.15)	2.89(0.19)	2.42(0.17)	2.00(0.58)	2.00(.)	2.78(0.10)	2.36(0.07)
40대	2.62(0.12)	2.50(0.07)	2.59(0.16)	2.76(0.12)	2.60(0.40)	2.21(0.15)	2.71(0.22)	2.67(0.42)	2.62(0.08)	2.53(0.06)
50대	2.84(0.11)	2.32(0.10)	2.54(0.16)	2.55(0.16)	2.06(0.13)	2.32(0.17)	2.67(0.14)	2.55(0.28)	2.62(0.07)	2.39(0.07)
60대	2.75(0.23)	2.45(0.17)	3.13(0.19)	2.80(0.25)	3.00(0.26)	2.29(0.29)	2.93(0.17)	2.56(0.22)	2.94(0.10)	2.53(0.11)
70대 이상	2.43(0.2)	2.78(0.32)	2.50(0.50)	2.33(0.21)	2.33(0.33)	3.00(0.41)	2.80(0.73)	2.80(0.20)	2.53(0.23)	2.71(0.15)
소계	2.77(0.06)	2.45(0.04)	2.78(0.08)	2.70(0.07)	2.59(0.10)	2.40(0.08)	2.81(0.10)	2.62(0.14)	2.76(0.04)	2.51(0.03)

가정폭력의 체감안전도가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85)=3.74$, $p<.001$, $MSE=0.63$, $\eta_p^2=.02$, 성별의 주효과, $F(1,985)=5.82$, $p<.05$, $MSE=0.63$, $\eta_p^2=.01$ 가 유의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대가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연령대	사례수	서브세트	
		1	2
50대	218	2.51	
30대	175	2.52	
40대	277	2.56	
70대 이상	41	2.63	
20대	144	2.65	
60대	118	2.75	
10대	68		3.09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30대, 5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우리 사회에 성폭력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F value	p -value
10대	.89	0.35
20대	5.12	0.024
30대	8.75	0.001
40대	1.52	0.217
50대	4.24	0.04
60대	8.88	0.003
70대 이상	0.53	0.466

5)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3.29, 표준오차는 0.24으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1029)=12.12, p<.001$). 이는 국민들이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9> 성·연령별 가정폭력의 증가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36(0.24)	3.33(0.21)	2.93(0.21)	3.18(0.18)	3.00(.)	2.92(0.23)	3.50(0.50)	3.00(.)	3.14(0.15)	3.15(0.12)
20대	3.22(0.13)	3.47(0.10)	3.17(0.20)	2.89(0.31)	3.40(0.40)	3.70(0.26)	3.00(0.00)	2.50(1.50)	3.21(0.10)	3.41(0.09)
30대	3.16(0.13)	3.47(0.09)	3.31(0.26)	3.18(0.21)	3.53(0.19)	3.54(0.15)	2.67(0.33)	3.00(.)	3.27(0.10)	3.43(0.07)
40대	3.29(0.08)	3.44(0.07)	3.19(0.14)	3.18(0.14)	3.00(0.32)	3.67(0.16)	3.00(0.16)	3.33(0.21)	3.21(0.07)	3.40(0.06)
50대	3.18(0.1)	3.22(0.10)	3.12(0.15)	3.25(0.20)	3.53(0.17)	3.21(0.18)	3.10(0.15)	3.27(0.19)	3.20(0.07)	3.23(0.08)
60대	3.06(0.23)	3.15(0.15)	3.67(0.19)	3.40(0.22)	3.33(0.42)	3.50(0.27)	3.07(0.19)	3.13(0.18)	3.23(0.12)	3.24(0.10)
70대 이상	3.43(0.2)	3.44(0.18)	3.50(0.50)	3.50(0.43)	3.67(0.33)	3.00(0.00)	2.60(0.60)	3.40(0.24)	3.24(0.22)	3.38(0.13)
소계	3.22(0.05)	3.39(0.04)	3.22(0.07)	3.20(0.08)	3.45(0.10)	3.43(0.08)	3.03(0.10)	3.19(0.11)	3.22(0.04)	3.35(0.03)

가정폭력 증가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대에서는 여성의 지각된 가정 폭력 증가율이 남성의 지각된 성범죄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F(1,985)=4.83, p<.05, MSE=0.63$).

	F value	p -value
10대	0.01	0.913
20대	12.04	0.001
30대	2.13	0.145
40대	20.22	0.001
50대	0.60	0.44
60대	0.01	0.921
70대 이상	0.93	0.336

6)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경찰활동 및 개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2.49, 표준오차는 0.28으로 응답의 중간 값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036)=18.24, p<.001$).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표 10〉 성·연령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27(0.24)	3.00(0.22)	3.07(0.27)	3.00(0.23)	4.00(.)	3.25(0.35)	3.50(0.50)	3.00(.)	3.21(0.17)	3.08(0.15)
20대	2.66(0.17)	2.17(0.09)	2.61(0.22)	2.33(0.29)	2.20(0.20)	1.90(0.31)	3.00(1.00)	1.50(0.50)	2.61(0.12)	2.14(0.08)
30대	2.33(0.14)	2.09(0.09)	2.08(0.21)	2.12(0.24)	2.47(0.22)	2.12(0.13)	2.00(0.58)	2.00(.)	2.31(0.10)	2.10(0.07)
40대	2.30(0.1)	2.31(0.08)	2.15(0.15)	2.39(0.10)	3.60(0.68)	2.07(0.14)	3.00(0.21)	2.17(0.31)	2.42(0.09)	2.29(0.06)
50대	2.69(0.13)	2.43(0.11)	2.65(0.18)	2.62(0.22)	2.29(0.19)	2.32(0.19)	2.52(0.21)	2.64(0.15)	2.59(0.09)	2.47(0.08)
60대	3.13(0.3)	2.68(0.19)	2.87(0.17)	2.40(0.22)	3.50(0.34)	2.63(0.37)	2.50(0.17)	2.75(0.19)	2.83(0.12)	2.64(0.11)
70대 이상	3.00(0.37)	3.44(0.34)	3.50(1.50)	3.17(0.60)	3.00(0.00)	4.00(0.58)	3.20(0.58)	3.40(0.60)	3.12(0.26)	3.46(0.24)
소계	2.60(0.07)	2.34(0.05)	2.56(0.09)	2.48(0.08)	2.66(0.13)	2.36(0.10)	2.67(0.11)	2.64(0.13)	2.61(0.04)	2.40(0.04)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81)=10.61$, $p<.001$, $MSE=0.72$, $\eta_p^2=.06$, 성별의 주효과, $F(1,981)=7.48$, $p<.01$, $MSE=0.72$, $\eta_p^2=.01$,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F(6,981)=2.10$, $p<.05$, $MSE=0.72$, $\eta_p^2=.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대와 70대에 비해 60대가, 60대에 비해 20대-50대가 경찰의 가정폭력 근절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연령대	N	서브세트		
		1	2	3
30대	175	2.18		
20대	144	2.33		
40대	276	2.34		
50대	216	2.53	2.53	
60대	118		2.75	
10대	68			3.13
70대 이상	40			3.32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대, 50대, 60대에서는 경찰의 가정폭력 근절활동에 대한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30대, 40대, 7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찰의 가정폭력 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 value	p -value
10대	0.09	0.79
20대	13.69	0.001
30대	6.71	0.01
40대	4.02	0.05
50대	1.10	0.294
60대	2.36	0.125
70대 이상	5.95	0.015

7) 학교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2.40, 표준오차는 0.25로 응답 가능한 설문 응답의 중앙치인 3(잘 모르겠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1040) = 15.21, p < .001$). 이는 국민

들이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으로부터 평균 이하의 안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11> 성·연령별 학교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2.55(0.28)	2.73(0.23)	2.73(0.27)	2.73(0.24)	3.00(.)	3.08(0.19)	3.50(1.50)	2.00(.)	2.72(0.19)	2.82(0.13)
20대	2.44(0.18)	2.23(0.10)	2.28(0.28)	2.11(0.20)	2.60(0.51)	2.30(0.26)	3.50(0.50)	2.50(0.50)	2.44(0.14)	2.23(0.08)
30대	2.45(0.12)	2.29(0.09)	1.92(0.21)	1.94(0.18)	2.21(0.14)	2.29(0.15)	2.67(0.88)	2.00(.)	2.29(0.09)	2.23(0.07)
40대	2.36(0.1)	2.41(0.08)	2.00(0.16)	2.34(0.11)	3.00(0.32)	2.33(0.16)	2.36(0.17)	3.00(0.37)	2.29(0.08)	2.40(0.06)
50대	2.54(0.13)	2.47(0.11)	2.07(0.15)	2.36(0.18)	2.71(0.22)	2.53(0.18)	2.45(0.13)	2.36(0.20)	2.44(0.08)	2.45(0.08)
60대	2.69(0.24)	2.45(0.18)	2.33(0.21)	2.10(0.23)	2.50(0.34)	2.62(0.32)	2.54(0.11)	2.31(0.18)	2.52(0.09)	2.37(0.11)
70대 이상	2.86(0.34)	2.22(0.32)	2.00(0.00)	2.83(0.54)	2.67(0.33)	2.50(0.29)	3.00(0.63)	2.25(0.25)	2.76(0.24)	2.43(0.20)
소계	2.48(0.06)	2.37(0.04)	2.19(0.08)	2.31(0.07)	2.54(0.11)	2.47(0.08)	2.57(0.09)	2.41(0.11)	2.43(0.04)	2.38(0.03)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근절 우선순위의 주효과, $F(3,987) = 3.69, p < .01, MSE = 0.65, \eta_p^2 = .01$, 성별의 주효과, $F(1,987) = 3.41, p < .05, MSE = 0.65, \eta_p^2 = .01$, 가 유의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근절 우선순위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우선순위를 둔 응답자가 느끼는 안정감이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우선순위를 둔 응답자가 느끼는 안정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근절우선순위	N	서브세트	
		1	2
학교폭력	239	2.25	
성폭력	527	2.41	2.41
가정폭력	160		2.49
불량식품	117		2.51

8) 학교폭력이 지난 1년간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3.36, 표준오차는 0.27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1041) = 13.46, p < .001$). 이는 국민들이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12> 성·연령별 학교폭력에 대한 증가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64(0.34)	3.73(0.18)	3.07(0.27)	3.73(0.27)	4.00(.)	2.67(0.31)	3.50(0.50)	4.00(.)	3.34(0.19)	3.41(0.16)
20대	3.47(0.17)	3.47(0.11)	3.94(0.17)	3.33(0.17)	3.60(0.51)	3.70(0.33)	2.00(0.00)	2.50(0.50)	3.58(0.13)	3.46(0.09)
30대	3.67(0.14)	3.60(0.10)	3.85(0.19)	3.65(0.17)	3.58(0.19)	3.38(0.17)	3.67(0.67)	3.00(.)	3.68(0.10)	3.55(0.08)
40대	3.45(0.12)	3.28(0.09)	3.33(0.17)	3.45(0.12)	3.20(0.20)	3.46(0.17)	3.43(0.17)	3.67(0.33)	3.40(0.08)	3.37(0.06)
50대	3.23(0.12)	3.28(0.12)	3.30(0.15)	3.45(0.23)	3.41(0.19)	3.32(0.24)	2.77(0.15)	3.36(0.15)	3.18(0.08)	3.33(0.09)
60대	2.75(0.23)	3.26(0.21)	2.87(0.24)	3.00(0.26)	3.00(0.26)	3.50(0.27)	3.11(0.17)	3.31(0.18)	2.95(0.11)	3.26(0.11)
70대 이상	3.00(0.31)	3.22(0.28)	3.50(0.50)	2.80(0.20)	4.00(0.00)	2.75(0.25)	2.40(0.24)	3.25(0.25)	3.06(0.20)	3.05(0.14)
소계	3.37(0.06)	3.40(0.05)	3.38(0.08)	3.43(0.08)	3.46(0.10)	3.32(0.09)	3.03(0.10)	3.34(0.10)	3.33(0.04)	3.39(0.04)

그리고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6,986) = 2.34, p < .05, MSE = 0.73, \eta_p^2 = .01$).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60대와 70대가 느끼는 학교폭력 범죄 증가율은 20대와 30대가 느끼는 학교 폭력 증가율보다 낮았다.

연령대	N	서브세트	
		1	2
70대 이상	39	3.05	
60대	118	3.09	
50대	219	3.26	3.26
40대	279	3.38	3.38
10대	68	3.38	3.38
20대	144		3.51
30대	175		3.6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0대에서는 여성의 지각된 학교 폭력 증가율이 남성의 지각된 학교 범죄 증가율 보다 높았다($F(6,986) = 5.33, p < .05, MSE = 0.73$).

9)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의 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02, 표준오차는 0.28으로 응답의 중간 값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이 보통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13> 성·연령별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55(0.25)	3.53(0.22)	3.71(0.24)	3.82(0.23)	4.00(.)	3.67(0.22)	4.50(0.50)	3.00(.)	3.71(0.16)	3.64(0.12)
20대	3.19(0.19)	2.70(0.11)	2.61(0.24)	2.89(0.20)	3.80(0.37)	2.80(0.29)	3.00(0.00)	3.00(1.00)	3.05(0.14)	2.74(0.09)
30대	2.73(0.13)	2.75(0.10)	2.77(0.23)	2.71(0.25)	3.05(0.16)	2.71(0.15)	3.67(0.33)	4.00(.)	2.87(0.09)	2.75(0.08)
40대	2.95(0.13)	2.91(0.08)	2.74(0.20)	2.98(0.14)	3.40(0.60)	2.89(0.15)	3.21(0.19)	3.33(0.42)	2.95(0.10)	2.94(0.06)
50대	3.12(0.13)	2.83(0.12)	3.07(0.19)	3.14(0.21)	3.12(0.21)	2.82(0.27)	3.09(0.17)	3.00(0.40)	3.10(0.08)	2.91(0.10)
60대	3.50(0.24)	3.30(0.22)	3.13(0.22)	2.80(0.20)	3.67(0.42)	3.13(0.35)	3.04(0.18)	3.31(0.20)	3.23(0.12)	3.19(0.12)
70대 이상	3.86(0.34)	3.44(0.29)	3.50(0.50)	3.83(0.60)	2.33(0.67)	4.00(0.71)	3.80(0.58)	3.20(0.37)	3.53(0.27)	3.58(0.22)
소계	3.10(0.07)	2.89(0.05)	2.98(0.09)	3.07(0.09)	3.21(0.12)	2.98(0.09)	3.20(0.10)	3.21(0.15)	3.10(0.04)	2.96(0.04)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6,987) = 3.43, p < .01, MSE = 0.82, \eta_p^2 = .02$).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30대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10대와 70대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N	서브세트			
		1	2	3	4
30대	175	2.79			
20대	144	2.86	2.86		
40대	279	2.94	2.94		
50대	218	3.01	3.01		
60대	119		3.21	3.21	
70대 이상	41			3.56	3.56
10대	67				3.67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6,987) = 6.08, p < .01, MSE = 0.82$).

10) 불량식품에 대한 체감안전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2.33, 표준오차는 0.27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1040) = 10.78, p < .001$). 이는 국민들이 우리사회가 불량식품으로부터 평균 이하의 안전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표 14〉 성·연령별 불량식품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2.55(0.21)	2.33(0.16)	3.07(0.25)	2.73(0.24)	3.00(.)	2.00(0.21)	2.50(0.50)	1.00(.)	2.83(0.16)	2.31(0.12)
20대	2.63(0.19)	2.43(0.10)	2.50(0.27)	3.56(0.18)	2.20(0.20)	2.30(0.33)	2.00(1.00)	2.50(0.50)	2.53(0.14)	2.53(0.10)
30대	2.61(0.14)	2.37(0.10)	2.58(0.26)	2.35(0.17)	2.58(0.18)	2.33(0.18)	3.33(0.33)	2.00(.)	2.63(0.10)	2.36(0.08)
40대	2.55(0.13)	2.28(0.08)	2.04(0.16)	2.21(0.11)	2.40(0.40)	2.25(0.18)	2.29(0.27)	2.33(0.42)	2.37(0.09)	2.26(0.06)
50대	2.22(0.11)	2.51(0.14)	2.54(0.16)	2.09(0.13)	2.59(0.24)	2.32(0.17)	1.82(0.14)	1.55(0.16)	2.27(0.08)	2.29(0.09)
60대	2.40(0.19)	2.05(0.17)	2.40(0.21)	2.00(0.21)	2.50(0.43)	1.75(0.25)	2.00(0.16)	2.00(0.24)	2.23(0.11)	1.98(0.11)
70대 이상	1.86(0.26)	2.00(0.24)	2.00(0.00)	1.67(0.21)	1.67(0.33)	2.25(0.63)	1.60(0.24)	2.20(0.20)	1.76(0.14)	2.00(0.15)
소계	2.46(0.06)	2.35(0.05)	2.46(0.09)	2.31(0.07)	2.48(0.11)	2.22(0.08)	2.04(0.10)	1.95(0.13)	2.39(0.04)	2.29(0.03)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85) = 2.84, p < .001, MSE = 0.71, \eta_p^2 = .02$, 성별의 주효과, $F(6,985) = 3.76, p < .05, MSE = 0.71, \eta_p^2 = .01$,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F(6,985) = 2.11, p < .05, MSE = 0.71, \eta_p^2 = .01$ 이 유의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70대의 체감 안전도가 가장 낮았으며,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	N	서브세트		
		1	2	3
70대 이상	41	1.9		
60대	118	2.12	2.12	
50대	219		2.28	2.28
40대	278		2.3	2.3
30대	174		2.46	2.46
10대	68			2.53
20대	143			2.53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대에서만 유의미하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리사회가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F(6,985) = 4.88, p < .05, MSE = 0.71$).

11) 불량식품이 지난 1년간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평균은 3.28, 표준오차는 0.26으로 응답의 중간 값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1035) = 10.78, p < .001$). 이는 국민들이 지난 1년간 불량식품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표 15〉 성·연령별 불량식품에 대한 증가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60(0.34)	3.13(0.17)	3.33(0.16)	2.82(0.23)	3.00(.)	3.08(0.15)	3.50(0.50)	4.00(.)	3.43(0.15)	3.05(0.10)
20대	3.19(0.16)	3.20(0.10)	3.11(0.18)	2.78(0.28)	3.60(0.40)	3.11(0.11)	3.00(1.00)	4.50(0.50)	3.19(0.12)	3.18(0.09)
30대	3.18(0.12)	3.11(0.09)	3.00(0.28)	3.47(0.15)	3.11(0.17)	3.38(0.16)	3.00(0.00)	4.00(.)	3.12(0.09)	3.23(0.07)
40대	3.11(0.11)	3.46(0.09)	3.37(0.15)	3.15(0.14)	3.60(0.24)	3.25(0.13)	3.79(0.24)	3.33(0.42)	3.29(0.08)	3.34(0.07)
50대	3.52(0.13)	3.09(0.12)	3.27(0.15)	3.55(0.23)	3.29(0.25)	2.94(0.21)	3.55(0.17)	3.82(0.23)	3.43(0.08)	3.24(0.09)
60대	3.06(0.25)	3.26(0.23)	2.93(0.23)	3.10(0.23)	3.67(0.21)	3.38(0.32)	3.68(0.17)	3.62(0.20)	3.35(0.12)	3.36(0.12)
70대 이상	3.57(0.2)	2.78(0.22)	4.00(0.00)	3.80(0.37)	4.00(0.00)	3.25(0.48)	3.20(0.20)	3.40(0.24)	3.59(0.12)	3.22(0.17)
소계	3.27(0.06)	3.23(0.05)	3.22(0.07)	3.23(0.08)	3.36(0.11)	3.20(0.07)	3.58(0.10)	3.67(0.12)	3.32(0.04)	3.26(0.04)

그리고 불량식품의 증가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근절의 우선순위,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 불량식품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2) 불량식품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은 2.67, 표준오차는 0.29로 응답의 중간 값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t(1029) = 11.64, p < .001$). 이는 국민들이 경찰의 불량식품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나 예방 활동이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나타낸다.

〈표 16〉 성·연령별 불량식품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 차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소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3.36(0.15)	2.53(0.19)	2.87(0.29)	2.44(0.34)	3.00(.)	2.92(0.23)	3.00(1.00)	4.00(.)	3.07(0.17)	2.68(0.14)
20대	2.94(0.2)	2.62(0.10)	2.61(0.23)	2.50(0.38)	2.80(0.37)	2.70(0.40)	3.00(1.00)	2.50(0.50)	2.82(0.14)	2.61(0.10)
30대	2.67(0.15)	2.54(0.09)	2.83(0.24)	2.35(0.12)	2.58(0.21)	2.48(0.16)	3.00(0.58)	1.00(.)	2.69(0.11)	2.48(0.07)
40대	2.84(0.11)	2.39(0.09)	2.52(0.16)	2.57(0.12)	3.40(0.40)	2.57(0.15)	2.64(0.25)	2.83(0.40)	2.75(0.09)	2.48(0.06)
50대	2.55(0.13)	2.74(0.13)	2.56(0.19)	2.91(0.19)	2.67(0.32)	2.78(0.25)	2.00(0.19)	2.82(0.35)	2.46(0.09)	2.79(0.09)
60대	2.69(0.22)	2.94(0.25)	2.93(0.27)	2.78(0.22)	3.17(0.40)	2.25(0.45)	2.63(0.13)	2.87(0.24)	2.77(0.11)	2.78(0.14)
70대 이상	3.43(0.48)	3.11(0.39)	3.50(0.50)	3.50(0.43)	2.33(0.33)	4.00(0.41)	3.40(0.40)	3.00(0.32)	3.24(0.25)	3.33(0.21)
소계	2.79(0.07)	2.58(0.05)	2.69(0.09)	2.65(0.08)	2.76(0.13)	2.67(0.09)	2.53(0.10)	2.83(0.15)	2.72(0.04)	2.6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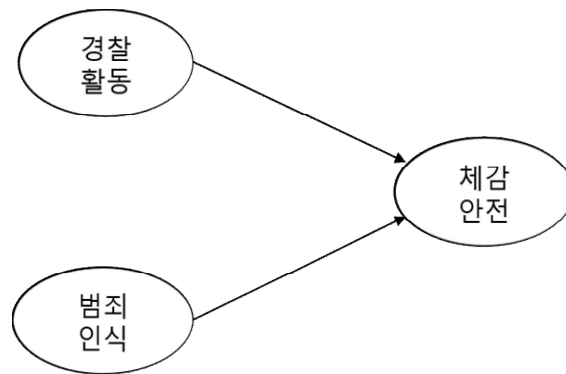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한 경찰활동 인식이 4대 사회악 근절의 우선순위(4: 성폭력 vs. 학교폭력 vs. 가정폭력 vs. 불량식품), 연령(7: 10대 vs. 20대 vs. 30대 vs. 40대 vs. 50대 vs. 60대 vs. 70이상), 성별(2: 남 vs. 여)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 $F(6,973) = 2.95$, $p < .001$, $MSE = 0.81$, $\eta_p^2 = .02$,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F(6,973) = 2.83$, $p < .01$, $MSE = 0.81$, $\eta_p^2 = .01$, 이 유의하였다.

성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연령에 따라 성차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변인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대, $F(6,973) = 7.82$, $p < .001$, $MSE = 0.81$,와 50대, $F(6,973) = 7.38$, $p < .001$, $MSE = 0.81$,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찰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2절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 검증

1. 연구 모형 및 가설

이 연구는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간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찰활동 요인과 기존이 연구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범죄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범죄인식은 개념화된 변수는 아니지만 범죄두려움, 범죄발생,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에 대한 정보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인식 수준이 체감안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연구의 모형

가설 1. 경찰활동은 체감안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범죄인식 수준은 체감안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각 잠재변수별로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이 낮은 변수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체감안전’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의 안전감’, ‘범죄인식’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 불량식품의 범죄 증가 정도’,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범죄 예방활동’을 제거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표 17>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 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체감 안전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감	1	0.539			.358	.683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감	1.038	0.573	0.102	10.191***		
	→ 불량식품으로부터의 안전감	0.657	0.328	0.093	7.086***		
	→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감	0.815	0.542	0.082	9.939***		
범죄 인식	→ 가정폭력 증가 정도	1	0.517			.081	.0226
	→ 학교폭력 증가 정도	1.109	0.512	0.133	8.339***		
	→ 불량식품 증가 정도	0.562	0.267	0.102	5.488***		
	→ 성폭력 증가정도	1.129	0.565	0.132	8.541***		
경찰 활동	→ 가정폭력 예방활동	1	0.558			.319	.638
	→ 학교폭력 예방활동	1.062	0.155	0.286	3.717***		
	→ 불량식품 단속활동	0.848	0.462	0.089	9.524***		
	→ 성폭력 예방활동	1.335	0.755	0.127	10.505***		

* $\chi^2=351.657$, $df=51$, $p=.001$, $\chi^2/df=6.895$, $TLI=.707$, $CFI=.773$ $RMSEA=.083$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하였다.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보여 주어서 측정모형이 표본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잠재변수들은 하위요인별로 평균으로 치환하여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든 경로에서 .45 이상으로 좋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산추출값(AVE) 값은 .39 이상, 개념신뢰도는 .65이상의 값을 보여주는 등 모형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 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체감 안전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감	1	0.557			.438	.700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감	0.969	0.552	0.098	9.913***		
	→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감	0.789	0.542	0.08	9.83***		
범죄 인식	→ 가정폭력 증가 정도	1	0.537			.391	.658
	→ 학교폭력 증가 정도	1.045	0.501	0.128	8.153***		
	→ 성폭력 증가 정도	1.087	0.565	0.13	8.34***		
범죄 예방 활동	→ 가정폭력 예방활동	1	0.561			.422	.677
	→ 불량식품 단속활동	0.828	0.454	0.088	9.445***		
	→ 성폭력 예방활동	1.34	0.762	0.13	10.323***		

* $\chi^2=177.795$, $df=24$, $p=.001$, $\chi^2/df=7.408$, $TLI=.786$, $CFI=.857$ $RMSEA=.086$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관계가 .5 이상인 경우가 있어 다중공선성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변수 간에 나타나는 요인 간 판별타당성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은 잠재변수 간에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체감안전과 경찰활동, 그리고 체감안전과 범죄인식의 경우 두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곱이 AVE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잠재변수 간 주요인들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9>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및 공분산

구분	상관	공분산	S.E.	C.R.	P
체감안전↔경찰활동	-0.597	-0.107	0.015	-7.1	.000
경찰활동↔범죄 인식	-0.235	-0.047	0.012	-3.842	.000
체감안전↔범죄 인식	0.609	0.135	0.018	7.53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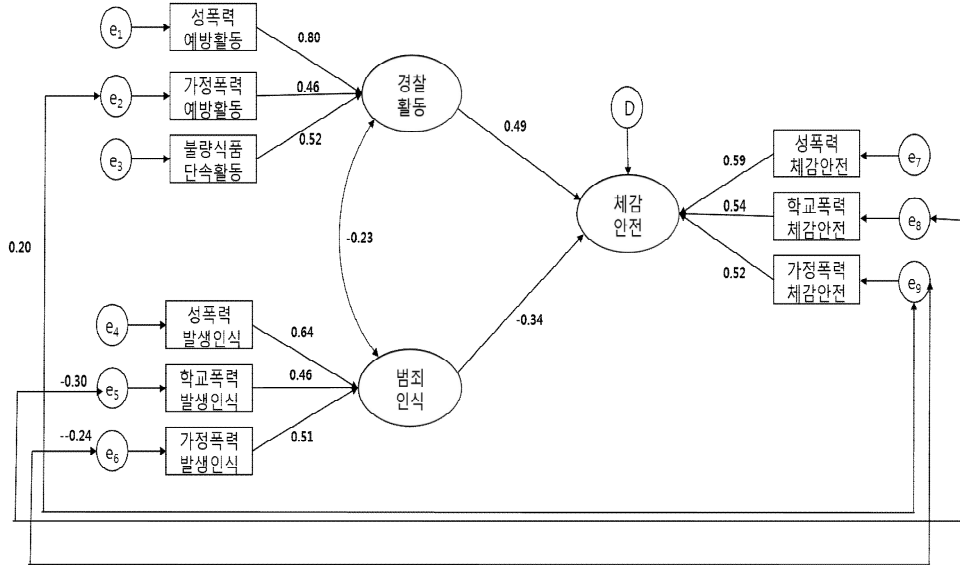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초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설정한 최초모형의 적합도가 기준값과 비교하여 볼 때, 가설을 채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 M.I)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수정지수가 큰 순으로 순차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수정모형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카이제곱값 변화량(df가 5만큼 변할 때 121.488 이상)도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56.327(df=21)$, Normed 카이제곱($\chi^2/df=2.68$)은 일반적으로 3 이하이면 수용할 만하다는 견해에 따라(우종필, 2014: 364),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델적합도 지수들도 전반적으로 0.9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에서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수정모형에 따른 적합도 측정결과

적합도 지수	모형의 적합도 결과			권장수준	적합여부
	최초모형	수정모형	차이		
CMIN	177.795	56.327	121.468		
df	24	21	3		
CMIN/DF	7.408	2.682	4.726	3 이하	적합
RMR	0.349	0.21	0.139	0.1이하	부적합
GFI	.956	.986	0.03	0.9이상	적합
AGFI	.918	.970	0.052	0.9이상	적합
CFI	.857	.967	0.11	0.9이상	적합
NFI	.840	.949	0.109	0.9이상	적합
IFI	.859	.968	0.109	0.9이상	적합
RMSEA	.086	0.044	0.042	0.05-0.1	부적합
Critical N(CN)	177	500	323	200이상	적합



아래와 같이 모수치의 추정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경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치안 체감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p < .001$)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즉, ‘경찰활동→체감안전’의 경로의 C.R. 값이 가설검정의 최소임계치인 1.64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R.= 7.568>1.645). 그리고 범죄인식이 체감안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345, p = .000$)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이는 범죄인식이 높을수록 낮은 체감안전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가설 채택여부
경찰활동→체감안전	.440	.487	.058	7.568***	가설 1 채택
범죄인식→체감안전	-.373	-.345	.070	-5.316**	가설 2 채택

제5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과 전략요인

앞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4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평균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치안 체감안전도가 낮았고, 연령별로는 10대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체감안전도에 대한 정도는 불량식품 < 학교 폭력 < 성폭력 < 가정 폭력 순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4대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량식품 < 가정 폭력 < 학교 폭력 < 성 폭력 순으로 지난 1년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4대 사회악에 대한 경찰활동에 대해 범죄별로 상이한 응답을 보이고 있었는데,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은 평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에 대한 경찰활동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50~6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외 연구들에서 노년층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에 비추어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의 4대 사회악에 대한 경찰활동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원인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4대 사회악에 대한 치안 체감안전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선정하여 검증한 결과 가시적인 경찰활동이 많고, 범죄예방활동이나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활발할수록 치안 체감안전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범죄가 증가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치안 체감안전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전략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다음에서는 범죄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토대로 간략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1. 언론보도와 범죄인식에 따른 체감안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동안 범죄를 직접 경험하기 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강력범죄의 경우 공식 범죄통계 비율에 비해 언론보도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한 공식범죄통계 보다 언론을 통해 범죄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Innes(2004)는 소수의 잔인한 범죄 사건이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되면 대중들은 범죄가 잔인해지며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고 설명한다.⁴⁰⁾ Graber(1980)는 미국사회에서 대중의 75%가 언론의 범죄 보도가 실제 발생률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Chiricos등(2000)도 매체 노출 빈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Pfeiffer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까지 10년 동안 독일 경찰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가 감소하고 있었지만,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고

40) Innes, M., "Crime as a signal crime as a memory", *Journal for Crime, Conflict and Media*, 1, 2004, pp. 15-22.

있었다. 이러한 범죄 증가에 대한 믿음은 TV 시청 패턴과 관련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많은 연구에서 언론을 통해 범죄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실제로 발생한 범죄율 보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며 (Roberts and Stalans, 1998), 범죄보도로 인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나타났다.⁴¹⁾

언론의 범죄보도와 시민의 범죄피해두려움 또는 범죄 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O'Keefe(1987)는 범죄뉴스에 대한 관심이 범죄피해두려움,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⁴²⁾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병기·이기웅(1993)의 연구에서⁴³⁾ 범죄인식은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와 관련이 있으며 언론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일방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범죄 추세를 과장되게 인식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박지선·박상조(2013)의 연구는⁴⁴⁾ 11년 동안의 국내 살인,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증가와 실제 주요 범죄 발생률 증가와 비교하고,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살인범죄 보도율은 실제 살인범죄 발생건수 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성범죄의 경우 11년간 보도율이 7.7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대중의 인식은 11년간 모든 유형의 범죄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인식 하였으며, 성범죄의 경우 4.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범죄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하는

41) Chiricos, T., Padgett, K. and M. Gertz, (2000), "Fear, TV news, and the Reality of Crime", *Criminology*, 38(3), 2000, pp. 755-785.

42) O'Keefe, Garrett J. (1987), "Crime News and Real-world Blues", *Communication Research*, 14(2), 1987, pp. 147-163.

43)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1호, 1993.

44) 박지선·박상조,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2013, 296-315면.

경향이 나타났으며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노성호·이기웅(1996)의 연구에서도⁴⁵⁾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며, 범죄 보도를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시민들에게 범죄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는 주로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경쟁이나 SNS의 확대에 의한 왜곡된 범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경찰의 정확한 정보전달 활동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억제 정책으로만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의 예방 및 단속활동에 대한 정보전달의 강화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2. 지역사회의 치안환경과 체감안전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체감안전은 달라질 수 있다(Amerio & Roccato, 2005; 성용은·최경식, 2009).⁴⁶⁾ 대표적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 치안환경으로는 지역 내 문제 즉, 무질서와 같은 물리적 환경 내지 지역사회 주민 간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ilson & Kelling(1982)의 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무

45) 노성호·이기웅, 한국언론의 범죄보도 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46) Amerio, Piero & Roccato, Michele, "A Predictive Model for Psychological Reactions to Crime in Italy: An Analysis of Fear of Crime and Concern about Crime as a Social Problem",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2005, pp. 17-28; 성용은·최경식, "주거지 치안환경과 범죄피해위험 인식 및 범죄두려움의 특성과 관계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2), 2009, 88면.

질서모델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목격하는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⁷⁾ 또한, Sampson(1999)의 집합효율성이론에서 범죄의 두려움은 무질서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지역사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범죄 예방활동의 참여와 그들 간의 믿음과 신뢰라는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결정 된다는 것이다.⁴⁸⁾ 프랭클린 외(Franklin et al., 2008)의 연구도 무질서모델을 지지하면서⁴⁹⁾, 이 후 무질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선 노력이 범죄두려움을 낮추고 치안 체감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oss & Jang(2001)은 지역사회 내의 비공식적 유대들이 범죄 두려움과 불신에 영향을 주는 무질서 효과를 완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⁵⁰⁾, Villarreal & Silva(2006)는 높은 사회적 유대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⁵¹⁾ 한편으로는, 강석진·이경훈(2007)의 연구에서는 이웃 간의 관계와 유대를 요인으로 한 근린관계 활성화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⁵²⁾, 10대들의 치안 체감안전도가 유일하게 경찰활동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의 효과성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2010년부터 관련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인 경찰활동을 강

47) Skogan, Wesley G..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New York: Free Press, 1990, 강소영, 지역특성별 일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8) 박정선,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 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2011, 75-96면.

49) Franklin, Travis W., C. A. Franklin, and N. E. Fearn.,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21), 2008, pp. 204-227.

50) Ross, Catherine E. & Mirowsky, John,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2001, pp. 177-187.

51) Villarreal, A. & Silva, B.,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2006, pp. 1725-1753.

52) 강석진·이경훈, “도시주거지역에서의 근린관계 활성화를 통한 방법환경조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7), 2007, 97-106면.

화하였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했던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Lane & Meeker(2003)은 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하면서, 무질서나 지역의 쇠퇴요인과 함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낮은 체감안전도에 주목하였다.⁵³⁾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정착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 유대 강화에 경찰활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은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Brown & Benedict(2002)의 연구는⁵⁴⁾ 시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역의 범죄환경 또는 범죄두려움이 경찰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치안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경찰활동이 범죄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범죄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내 무질서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3) Jodi Lane & James W. Meeker, Fear of Gang Crime: A Look at Three Theoretical Models, *Law & Society Review*, 37(2), 2003, pp. 425-456.

54) Brown, B. & Benedict, W. R.,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fear of crime in a rural setting: utility of a geographically focused survey for police services, planning, and assessment",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1(4), 2002, pp. 275-98.

제2절 결론

이 연구는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과거 연구에서 체감안전도에 대해 정리한 것을 토대로, ‘치안 체감안전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리하면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한 후,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서 주요 변수인 경찰활동과 범죄인식 요인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즉, 가시적 경찰활동이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에 대한 재검증과 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검증을 통해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조가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치안 체감안전도’는 ‘경찰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활동은 4대 사회악 근절활동 즉, 가시적인 경찰활동이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범죄인식이나, 과거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범죄에 대한 정보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대 사회악에 대한 치안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경찰활동과 범죄인식에 대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이 많고, 범죄예방활동이나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활발할수록 치안 체감안전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범죄가 증가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치안 체감안전도는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에 대한 이유들은 단순히 경찰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왜냐하면 경찰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치안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전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우선,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전략요소들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양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 이미 4대 사회악과 관련한 집중적 활동들은 단기적으로나마 그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범죄의 사각대지 해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범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직접 경험하거나 공식통계 수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경찰활동의 다각적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론매체의 보도율이 집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도경쟁에 대한 제재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왜곡된 범죄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억제정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로 인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적극적인 경찰의 예방 및 단속활동에 대한 정보전달의 강화전략을 병행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치안 체감안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사회 치안환경으로는 지역 내 문제 즉, 무질서와 같은 물리적 환경 내지 지역사회 주민 간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행연구들이 지지해 온 무질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개선 노력이 범죄두려움을 낮추고 치안 체감안전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이웃 간의 관계와 유대 강화는 지역사회 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치안 체감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범죄인식에 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범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그간 체감안전도에 대해 혼용하여 사용해 오던 용어들을 재정리함으로써 ‘치안 체감안전도’에 대해 개념화 한 것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치안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단순히 범죄율과 검거율의 성과를 통해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던 기관들의 노력 외에, 정책이 주목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도 차별성을 갖는다. 물론, 가시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검증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나, 범죄인식에 대한 영향정도는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범죄인식이 형성되는 데에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범죄발생, 범죄두려움, 범죄피해경험, 언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서도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영향관계는 분석하지 못했지만, 범죄인식에 대한 검증 후 이에 대한 영향 요소들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부 보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강석진·이경훈, “도시주거지역에서의 근린관계 활성화를 통한 방범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7), 2007.
- 강소영, “경찰의 4대 사회약 근절대책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 치안정책연구소, 2014.
- _____, 지역특성별 일선경찰기관에 대한 시민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경찰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내부자료, 2013.
- 김연수·김도우, “범죄안전 지표개발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24(4), 2013.
- 김영환, “경찰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경찰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2003.
- 노성호·이기웅, 한국언론의 범죄보도 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박정선, “범죄두려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 수준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죄와 비행”, 1, 2011.
- 박지선·박상조,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2013.
- 성용은·최경식, “주거지 치안환경과 범죄피해위험 인식 및 범죄두려움의 특성과 관계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2), 2009.
- 송봉규·장석헌,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효과성 연구: 경찰에 대한 만족

- 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 2013.
- 유효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비교분석”, 공공기관연구센터 포커스. 2013.
- 윤철규·최응렬, “4대 사회악 관련 경찰활동과 시민 체감안전도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53, 2015.
-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31호, 1993.
- 이윤희,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 정철우·강소영,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4호, 2014.
- 차훈진, “영국의 시민 안심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0, 2010.
-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대왕사, 2003, 98면.
- 최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최천근, “다층자료분석을 활용한 체감안전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1호, 2012.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2015, 2014.
- 홍성렬,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시그마프레스, 2005.

II. 외국문헌

- Amerio, Piero & Roccato, Michele, “A Predictive Model for Psychological Reactions to Crime in Italy: An Analysis of Fear of Crime and Concern about Crime as a Social Problem”,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2005.
- Brown, B. & Benedict, W. R.,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fear of crime in a rural setting: utility of a geographically focused survey for police services, planning, and assessment”,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1(4), 2002.
- Cheurprakobkit, Sutham & Bartsch, Robert A., “Police performance: A Model for assessing citizens' satisfac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e attributes”, *Police Quarterly* 4(4), 2001.
- Chiricos, T., Padgett, K. and M. Gertz, (2000), “Fear, TV news, and the Reality of Crime”, *Criminology*, 38(3), 2000.
- Clemente, F. & Kleinman, M. B.,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 1977.
- Dukes, Richard L. & Portillos, Edwardo, “Mod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olice Studies: International Review of Police Development* 32(2), 2009.
- Ferraro, K. F. & LaGrange, R.,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1987.
- Ferraro, Kenneth F.,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Franklin, Travis W., C. A. Franklin, and N. E. Fearn.,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21), 2008.
- Hunter, A., Symbols of incivilities: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Dallas, TX, November, 1979.
- Innes, M., "Crime as a signal crime as a memory", *Journal for Crime, Conflict and Media*, 1, 2004.
- Lane Jodi & James W. Meeker, Fear of Gang Crime: A Look at Three Theoretical Models, *Law & Society Review*, 37(2), 2003.
- Lyman, Michael D., *The Police: An Introduction*,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6.
- Moore, M. H., Trojanowicz, R. C. & Kelling, G. L., *Crime and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2,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988.
- O'Keefe, Garrett J. (1987), "Crime News and Real-world Blues", *Communication Research*, 14(2), 1987.
- Ross, Catherine E. & Mirowsky, John,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2001.

Salmi, Chermak, S., McGarrell, E. & Gruenewald, J., “Media coverage of police misconduct and attitudes toward police”, *Policing* 29(2), 2006.

Skogan, W. & Maxfield, M. G.,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1.

Skogan, W. and M.G. Maxfield,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1981.

Skogan, Wesley G..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New York: Free Press, 1990.

_____, “Asymmetry in the impact of encounters with police”, *Policing and Society* 16(2), 2006.

Villarreal, A. & Silva, B.,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2006.

Villarreal, A. & Silva, B.,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2006.

Weitzer, Ronald & Tuch, Steven A., “Determinants of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5.

Zhao, Jihong., Scheider, Matthew, & Thurman, Quint c.,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 2002.

Ⅲ. 기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632&cid=41989&categoryId=41989.](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632&cid=41989&categoryId=41989)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B9%98%EC%95%88%EC%B2%B4%EA%B0%90&query=%EC%B9%98%EC%95%88%EC%B2%B4%EA%B0%9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B9%98%EC%95%88%EC%B2%B4%EA%B0%90&query=%EC%B9%98%EC%95%88%EC%B2%B4%EA%B0%90&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책임연구보고서 2015-10

체감안전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4대 사회악을 중심으로 -

2016년 9월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